

2024년 제1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7일

여 수 시 장

2024/12/27

인



여수시 규칙 제852호

붙임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52호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건인보관소) 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④ 대행법인 등이 타인 소유의 부지를 건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토지등기부 등본</p> <p>2.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1통(임대차 계약용)</p> <p>3. 임대차 계약서 1통</p>	<p>제8조(건인보관소)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대행법인 등이 타인 소유의 부지를 건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토지등기부 등본</p> <p><u>2.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통(임대차 계약용)</u></p> <p>3. 임대차 계약서 1통</p>